

해열제 복용 숨기고 입국하면 ‘처벌’

거짓 서류 제출시 ‘검역법’ 위반으로 일벌백계…최대 징역 1년

강화된 ‘감염병 예방법’도 시행…“자가격리 이탈시에도 강력처벌”

최근 해열제 복용후 입국검역대를 통과한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법령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사례에 대해 검역조사 중 거짓 서류 제출로 보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검역법)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선 5일부터 같은 수준의 처벌이 가능도

록 감염병예방법을 강화했다.

해열제를 복용하는 경우엔 해외에서 비행기 탑승전 검역과 입국 검역대를 통과하더라도 최종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대상이 된다. 하지만 입국장에서 곧바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증상자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추가 접촉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

부장은 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해열제를 복용하고 검역을 통과한다는 것은 건강상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면서도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장은 이어 “해열제 복용 후 비행기 탑승 전과 탑승 후, 기내는 물론, 도착 후 이동 중 그리고 자가격리 중 접촉한 사람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전파 연결고리를

모르는 확진사례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면서 “법령에 따라 일벌백계 해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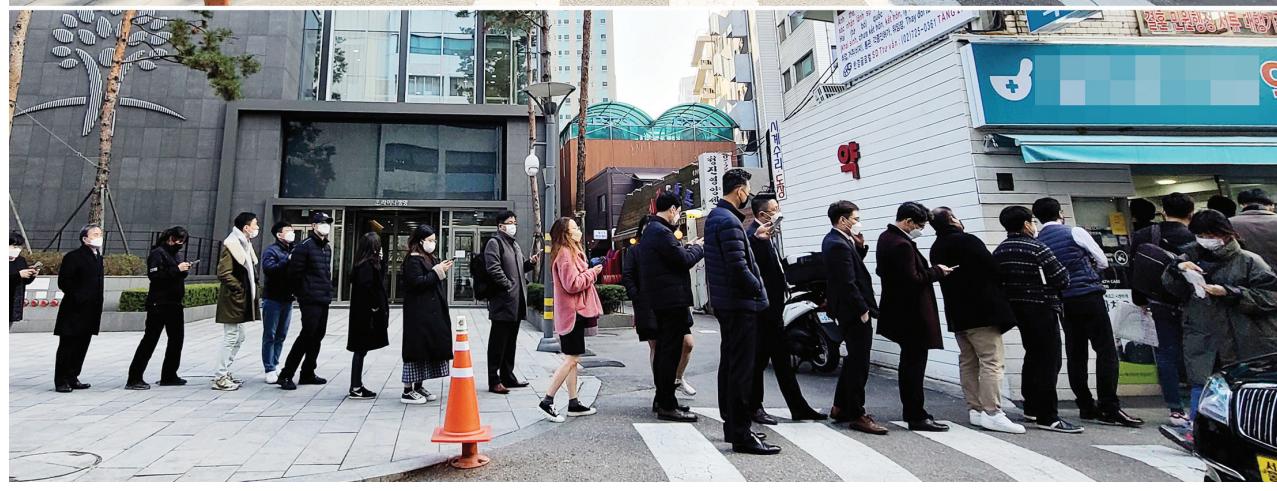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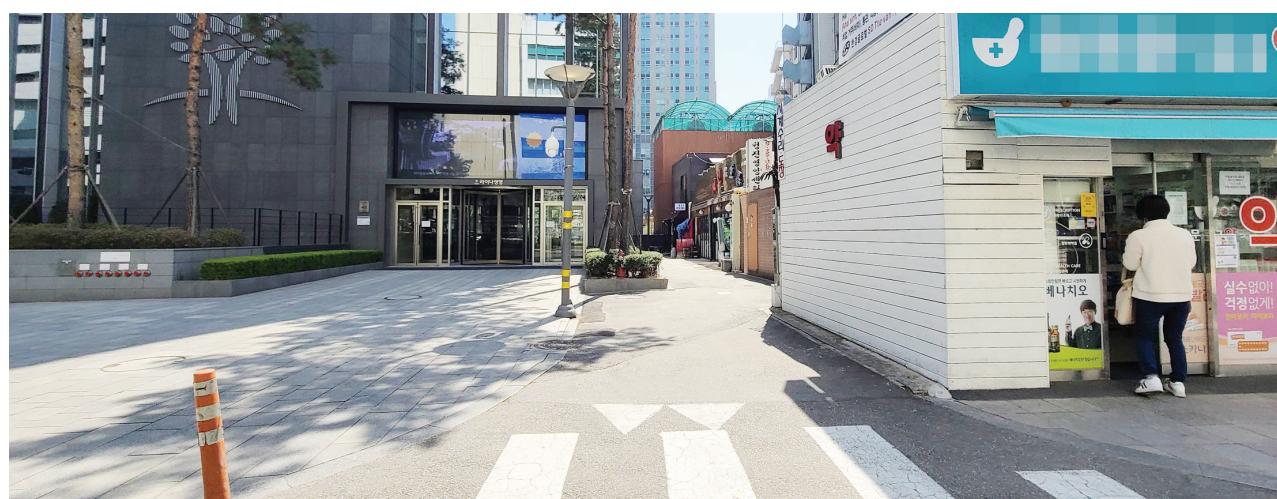
실제 지난 4일 부산시에 따르면 미국 캔자스에서 유학 중인 18세 남학생이 인천공항 입국 전인 지난 달 24일 미국서 비행기 탑승 전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제 20정 정도를 복용한 사례가 나왔다.

이에 따라 이 학생은 미국내 탑승전 발열검사대를 통과했고, 25일 인천공항 입국 검역대 역시 빠져나왔다. 그 뒤 인천공항에서 아버지 차를 타고 부산 자택까지 이동한 뒤 다음 날 오전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가족은 모두 ‘음성’이 확인됐으며, 비행기 내 접촉자는 관할기관에 통보된 상태다.

또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영국서 유학 중인 20대 여성은 지난 2일 인천공항에 도착하기 전 종합감기약을 복용해왔다. 그러나 영국에서 인천에 도착할 때까지 ‘코로나19’ 관련 문진표 등에 관련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결국 무증상으로 접역대를 통과한 뒤 인천공항서 김포공항으로 이동해 저녁 7시쯤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이 여성은 제주공항 내 도보 이동형(워킹 슬루) 검사를 받았고, 3일 오후 확진판정을 받아 제주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권준욱 부장은 “최근 검역 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거나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같은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다. 권 부장은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라며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주방, 입국금지 등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적 마스크 구매줄이 사라졌다” 5일 서울 종로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지 않고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란’이 일었던 마스크 수급이 ‘공적 마스크 5부제’ 한 달을 넘으면서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 아래는 지난 3월 5부제 시행 초기 구매 줄.

카타르서 귀국 20대 코로나19 확진…광주 27번째

카타르에서 입국한 20대 광주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A씨(23·여)가 전날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났다.

3일 오후 카타르에서 귀국한 A씨는 인천공항에서 전용버스를 타고 광명역으로 이동한 뒤 KTX로 4일 오전 광주에 도착했다.

4일 오후 3시쯤 부친의 차를 타고 서구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했고, 같은 날 오후 10시30분쯤 확진 판정을 받아 빛고을전남대병원으로 이송됐다.

방역당국은 A씨 가족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A씨 확진으로 광주 코로나19 확진환자는 27명, 해외유입 관련 확진환자는 17명으로 늘었다.

목포시, 봉어빵 부부 접촉 30대 자가격리 위반 고발

전남 목포에서 봉어빵 노점상 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를 부부와 접촉한 30대 자가격리자가 무단으로 이탈해 보건당국이 경찰에 이 담성을 고발했다.

4일 목포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봉어빵 노점 부부의 가게에서 봉어빵을 구매해 접촉자로 분류됐었다.

며칠 전에 고발했다.

목포시는 A씨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80조에 근거해 고발조치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봉어빵 노점 부부의 가게에서 봉어빵을 구매해 접촉자로 분류됐었다.

목포=박정수 기자

● 단신 ●

음주운전 부추기고 교통사고 뒤 도피시킨 농협 간부

음주운전을 교사한 것도 모자라 교통사고 뒤 운전자의 도피를 도운 전남지역 농협 간부가 벌금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상 음주운전 교사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농협 간부 A씨(49)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0일 전남 곡성군의 한 식당에서 B씨와 술을 마셨다. 같은 날 오후 4시50분쯤 A씨는 술에 취한 B씨에게 ‘네가 자동차를 운전해 나를 호텔로 데려다 달리’고 밝혔다.

B씨는 허증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회전교차로에서 C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로 인해 C씨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500여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C씨의 차량이 훼손됐지만 B씨는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했다.

당시 A씨는 마침 현장을 지나가는 지인의 차량에 B씨를 태워 교통사고 현장을 벗어나게 했다.

결국 A씨는 B씨의 음주운전을 교사하고,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씨를 도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이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을 떠나도록 해 적정한 형사사법권의 행사를 방해했다”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B씨와의 친분관계로 사고현장을 떠나게 했을 뿐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을 기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또 “B씨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이탈해 그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음주사실을 자백하는 등 개선의 점이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금품수수 부하직원 신고 안한 간부 징계는 정당

부하직원의 금품수수 등의 부정행위 신고의무를 위반한 간부 공무원의 정직 2개월과 1000만원 상당의 징계부과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기창)는 전남도 공무원 A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2016년 A씨가 근무하는 부서에 대한 특정검사를 실시했다. 도는 A씨의 부하직원인 B씨가 특정 업체 대표에게 200만원을 받았고, 또 다른 업체에게 떡값으로 80만원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B씨는 받은 금액을 개인 영달을 위한 선물비용이나 생활비, 용돈 등으로 사용했다.

또 B씨는 소모품 구입 등으로 618만원을 사용한다고 결재를 받았지만 자신이 물품검수를 한다는 점을 이용해 떡값을 받은 업체와 째고, 서류 조작을 통해 구매 금액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

전남도는 B씨가 구매 물량의 70%가 넘는 4700만원 상당 소모품을 특정 업체에서만 구입했음에도 A씨가 지도·감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A씨가 다른 관리자에게 부당거래를 보고받았음에도 전남도에 보고하거나 고발하지 않고 B씨에게 사직을 권고해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 의무도 위반했다고 봤다.

여기에 전남도는 A씨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2건의 연구사업에 대해 총 15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연구수당을 부당수령한 점도 확인했다.

전남도는 2018년 1월 A씨에게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2개월에 징계부과금 1000만원 상당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소속직원의 지출행위를 일일이 감독하거나 부정행위를 발견할 수 없었던 점, B씨가 사직하기 전 부정행위를 알지 못했던 점 등을 이유로 전남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정역 10월에 임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장부와 재고 등을 실제로 확인했다면 범행을 조기 발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N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